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컨설팅 시 주요 점검내용

업무범위	법적근거	벌칙 및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9조	500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
법령 요지 등의 게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500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500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500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000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500 ~ 1,000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실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500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의 검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1,00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500
작업환경측정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1,000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	1,000
서류의 보존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300

회사소개



⊕ 안전·보건 주요 사업

- 산업안전컨설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직무스트레스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자율안전확인신고(KCs)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안전검사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안전용품 MRO(구매대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전기안전시험 [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 (IEC 60204-1)
- KC인증 컨설팅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4호)

📈 사업실적

- 산업안전컨설팅
 - 전 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수
- 안전·보건교육
 - 한국환경공단, 안전원자력연료(주), LG전자(주), (주)동원F&B, (주)판토스, (주)대우건설 외
- 위험성평가
 - 제조·서비스업 : 현대파텍스(주), (주)동원F&B, JW중외제약(주), 신일제약(주), (주)프레스솔루션 외
 - 건설업 : 한국텔레콤(주), (주)수정환경플랜트, 어반종합건설(주), (주)무궁화건설 외
 - 공공기관 : (재)한국과화창의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제조·서비스업 : (주)카카오, LG전자(주), (주)녹십자, 엘비휴넷(주), 한화에너지(주) 외
 - 토목/건설업 : (주)효성, (주)대우건설, (주)한라, (주)코오롱글로벌, (주)한진중공업 외
 - 공공기관 : 공항공철도(주), (주)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주), 서울구치소 외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 전 지역(컨베이어,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기 등) 3,800 형식 이상 신고 진행(19.12.기준)
- 안전검사 컨설팅
 - (주)LGCNS, (주)티몬, SK하이이엔지, (주)CJENM, 롯데로지스틱스(주), 동원에프앤비(주) 외

🏢 회사소개

안전한 일터! 건강한 미래!



SU Group Co., Ltd.

회사명	(주)SU그룹
브랜드	세이프어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3층 (가산동, 대륭21차)
연락처	T. 02-567-7904 F. 02-567-7905 E. safety@safesus.co.kr
홈페이지	www.safesus.co.kr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어려우신가요?

산업안전컨설팅

세이프어스 와 함께하세요!

안전보건 교육

안전점검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건강한 미래!



SU Group Co., Ltd.

안전관리 제도 소개



산업안전 컨설팅이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 등을 세이프어스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지도·조언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식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관리란?

• 안전관리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 2018.09.01일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Tip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163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산업안전 컨설팅



컨설팅 흐름도



세부계획



1. 사업장 방문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일정 확인



2.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월 1회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실시 및 안전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지도·조언



3. 보고서 작성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사업장의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자료, 기술자료 및 홍보자료 제공



4. 개선의견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개선대책 및 의견 제시



5. 개선대책수립

사업장과 협의 후 개선대책 수립



6. 이행 및 관리

수립된 개선대책의 이행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특별한 서비스



컨설팅 의뢰 시

무료 서비스

	안전·보건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제공
	사업장 업종별, 규모별에 따른 안전관련 구비서류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업무처리 지원
	컨설팅 종합보고서 제공

할인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근로계약 부당직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